#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

| 의 안 번 호 | 2414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와 '영동대로 일대 통합역사 구축 및 지하 공간 복합개발'에 대한 업무협약('16.10월)을 체결하여,

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에 따른 광역철도와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에 따른 환승센터를 통합 시공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개발사업임

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구간 내 삼성~동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코자 함

라. 본 위·수탁협약에 따른 삼성~동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무이거나 예산이 편성된 사무가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체 사업개요 ※ 기본설계(안) 기준

○ **사업구간: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사업규모: 지하 7층, 시설면적 약 22만㎡**(복합환승센터 597m, 철도본선 403m)

○ **주요시설** : (지하공간개발) 지상광장, 지하차도, 포럼 및 상업시설, 버스주차장 등

(철도건설) **광역철도**(삼성동탄선, GTX-C노선), 위례신사선

○ **사업기간/사업비: '15. ~ '27. / 1조 7,459억원**

【 조감도 】

【 횡단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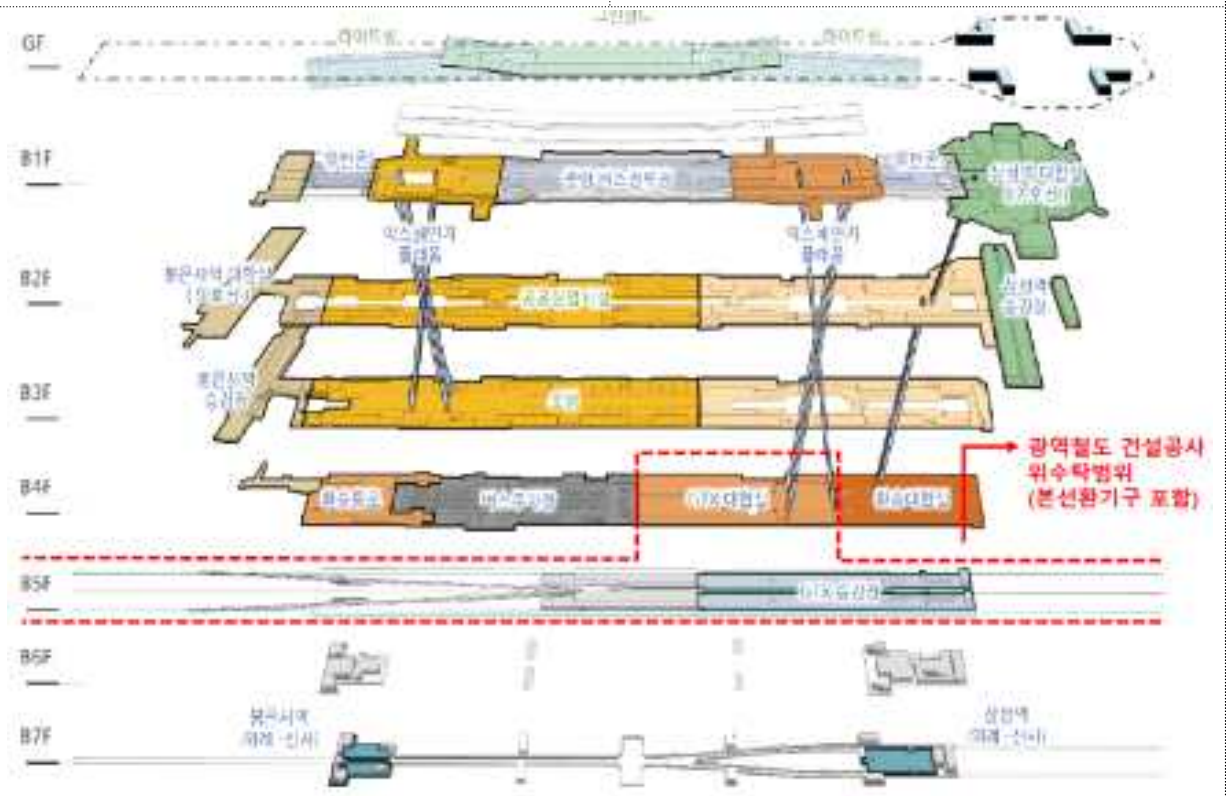


【 기본설계(안) 공간구성 】

## 나. 그간 추진경위

○ **'16. 5. 영동대로 통합개발 기본구상 발표**(市)

○ **'16. 10.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市-국토부)

○ **'17. 6.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계획 발표**(市)

○ **'17. 10. 국제설계 현상공모 선정**(Light Walk, 정림·DPA 컨소시엄)

○ **'18. 2.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설계 착수**

○ **'19. 6.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승인**(국토부) **및 고시**('19.10월)

○ **'20. 6. 광역철도 총사업비 기재부 협의 및 조정심의 완료**

○ **'20. 6. 삼성동탄선 및 GTX-C노선 동시시공**(영동대로 구간) **관련 안건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의결**

○ **'20. 7. 영동대로 복합개발 토목공사 1~4공구 입찰공고**

○ **'21. 2. 영동대로 복합개발 토목공사 우선시공분**(Fast Track) **계약**

〔 **광역철도 건설공사 위·수탁협약 관련 협의**(市-국토부-철도공단, '21.1~5.) 〕

· 위·수탁협약서(안) 의견회신 요청(철도공단→市, '21.2.25.)

· 문구조정 후 위·수탁협약서(안) 검토의견 회신(市→철도공단, '21.3.17.)

· 위·수탁협약서(안) 법률자문 완료(市, '21.3.24.)

· 위·수탁협약서(안) 검토의견 회신(철도공단→市, '21.4.13.)

· 법률자문 등 반영하여 위·수탁협약서(안) 최종의견 회신(市→철도공단, '21.5.7.)

## 마. 주요 협약내용

○ **협약개요**

- 협약서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위·수탁협약
- 협 약 자 : 국가철도공단(위탁기관) - 서울특별시(수탁기관)
- 협약목적 :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구간 내 삼성~동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삼성정거장과 본선공사의 효율적 추진

○ **주요내용**

- **(위·수탁범위)**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삼성정거장 및 본선 공사(설계,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협의사항 포함)
- **(사업 기간)**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구간 내 삼성~동탄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삼성정거장과 본선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 **(업무의 분담)**

1. 공단의 업무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위탁사업비 지급

·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에 대하여는 향후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전까지 시행

· 사업완료 후 준공자산 국가귀속 조치

2. 서울시의 업무

· 용지 매수 및 국·공유지 사용협의

· 토목 · 건축 · 설비분야 설계 및 공사(지장물 이설 포함)

· 토목 · 건축 · 설비분야 공사 감독, 민원처리, 준공검사 등 업무

· 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협의서류 작성 및 협의

· 각종 영향평가 및 인 · 허가 협의

· 준공에 필요한 각종도서, 자료작성 및 제공

- **(사업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결과(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6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21.1월)에 따름
- **(협약의 효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에 관한 사항은 C노선의 "민간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때 소멸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C노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3. 참고사항

### 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추진체계

○ **국가와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국가(국토교통부) : 국가 철도사업에 필요한 궤도, 기계(본선), 신호, 전차선, 전력, 통신 공사 등
- 서울특별시 : 국가(국토교통부) 시행사업 외의 사업

○ **철도건설 사업비 관련 사항**

| 구 분 | 사업유형 | 국 가 | 서울시 | 민 간 |
|---|---|---|---|---|
| **광역철도**(삼성동탄) | 재정 | 70% | 30% | - |
| **광역철도**(GTX-C) | 민자 | 35% | 15% | 50% |
| **도시철도**(위례신사) | 민자 | 12% | 38% | 50%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철도건설법」,「도시철도법」등 관련법에 따라 분담

### 나. 관계법령

○ **복합환승센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광역철도건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광역철도 건설공사 위탁 관련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작성자 :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최연섭 (☎2133-2238)